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선수선발규정

개정 2021.10.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조제1항제7조에 따라 우수한 골프선수 발굴과 육성을 위한 선발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국가대표는 국가대표 선수를 말한다. <개정 2021.10. 1.>

② 국가대표 선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의2호에 따른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골프협회(이하 “협회” 또는 “KGA“라 한다)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③ 국가상비군은 주니어국가상비군을 포함한 국가상비군 선수를 말한다. <개정 2021.10. 1.>

④ 제2항의 국가대표 선수에는 “협회 국가대표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⑤ 삭제 <2021.10. 1.>

제3조(적용범위) 협회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주니어국가상비군) 선발과 관련하여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되지 않는 한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4조(선발자격) ①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 선수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1.10. 1.>

②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 선수는 협회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6조의 2 특별선발에 따라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사람을 선발하여야 할 경우 선수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한시적으로 협회의 소속 선수로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 1.>

제5조(선발절차) ① 경기력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선발 일정 등 세부사항의 결정과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 선수의 선발 결과를 심의한 후 후보자를 확정한다.

② 협회 선수를 선발하고자 할 때는 선발전 개시일 2개월 전에 선발 일정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국가대표 선발전 경기조건 등 공지가 늦어지는 경우 공고 지연의 사유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하고 선발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0. 1.>

③ 협회는 선수선발 즉시 위원회가 확정된 후보 명단 등 선발 개요를 공고하

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최종명단 발표 후 10일 이내에 결원이 생기더라도 충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1.10. 1.>

[본조 신설 2021.10. 1.]

제6조(선발구분) 국가대표, 국가상비군 그리고 주니어국가상비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초등부 제외)
2. 주니어국가상비군 (5~6학년 초등부)

제6조의 2(특별선발) 주요 국제대회에 파견하는 선수선발은 위원회 의결에 따라 회장의 승인으로 특별 선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및 제7조에서 이동 2021.10. 1.]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10. 1.>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1.10. 1.>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1.10. 1.>
3. 협회(시도협회 포함) 및 산하 연맹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4. 폭력행위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1.10. 1.>
5.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신설 2021.10. 1.>
6.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8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1.10. 1.>
7.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8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신설 2021.10. 1.>
8. 승부조작, 국가대표 강화훈련 및 선수선발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훈련비 횡령, 배임, 강간·강제추행 행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개정 2021.10. 1.>
9.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의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신설 2021.10. 1.>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설 2021.10. 1.>

나.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설 2021.10. 1.>

10. 도박과 관련한 행위로 형법 제246조 또는 제247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신설 2021.10. 1.>

가. 1천만원 초과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설 2021.10. 1.>

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설 2021.10. 1.>

11.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 <개정 2021.10. 1.>

12. 스포츠공정위원회(연맹체 및 시도골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포함)에 회부되어 징계 심의 중인 사람은 해당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위원회 결의로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 선발대상에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10. 1.>

[제5조에서 이동 2021.10. 1.]

제8조(선발시기) 선수선발은 당해연도 10월~11월 중에 제11조(선발방법)에 의거 선발한다.

제9조(선발인원) 선발인원은 다음의 정수로 한다.

구 분	국가대표	국가상비군			주니어국가상비군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남 자	6명	5명	8명	6명	3명
여 자	6명	5명	8명	3명	3명
계	12명	10명	16명	9명	6명

제10조(선발대회와 배점) ① 선발대회는 협회 및 연맹(초등,중고,대학) 또는 시·도협회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협회 승인대회를 기준으로 하며, 대회 선정과 폐지, 배점의 결정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선발대회 및 배점은 아래와 같으며, 순위별 배점은 별표에 따른다.

배 점	선 발 대 회
	국내대회
2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정구배 한국아마추어골프선수권 · 강민구배 한국여자아마추어골프선수권
15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체육대회 개인전 · 2021 전국시도대학학생대회 겸 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인순위 <개정 2021.10. 1.> · 블루원배 한국주니어골프선수권대회 · 빛고을중흥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개정 2021.10. 1.> · 송암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 매경솔라고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 KB금융그룹배 여자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 베어크리크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 드림파크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개정 2021.10. 1.>
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주니어골프선수권대회 · 박카스배 SBSGOLF 전국시도학생골프팀선수권대회 개인전 · 삭제 <2021.10. 1.> · 한국초등학교골프연맹회장배 전국학생골프대회 · 한국중·고등학교골프연맹회장배 전국중·고등학생골프대회 · 한국대학골프연맹회장배 대학 대항 골프대회
5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제 <2021.10. 1.> · 초·중·고, 대학 연맹 주최·주관 승인 대회(단, 당해연도 사업승인 대회에 한함) · 시도협회장배 (주1: 점수부여방법등 KGA의 사전 승인을 받은 대회) (주2: 대학부, 일반부 제외)

③ 상기 제2항의 선발대회 중 연맹 및 시도골프협회 주관 대회가 당 협회(대한골프협회) 주관대회 일자(본경기)와 중복되는 경우 선발대회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협회 주관대회 일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변경되어 연맹 또는 시·도협회 대회일자와 중복되거나, 부별(남자부, 여자부) 일정이 틀릴 경우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해당 대회를 선발대회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별표의 순위별 점수 분배 시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 해당 순위의 점수를 합산하여 인원수만큼 나눈 뒤(소수점 반올림) 동순위자에게 각각 부여한다. 단, 최저순위에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 인원수에 상관없이 최저점수를 해당 선수 전원에게 부여한다.

제11조(선발방법) ① 국가대표는 제3항에 따라 우선선발한 후 제4항의 선발전을 통해 선발한다.

② 국가상비군은 제5항에 따라 선발하며, 주니어국가상비군은 제10조제2항에 나열된 대회에서 획득한 합산점수 상위 순으로 선발한다. <개정 2021.10. 1.>

③ 국가대표 우선선발

1. 우선선발 인원은 남녀 각 3명이며, 선발방법은 선발전 지정대회에서 획득한 평균점수의 상위 순으로 한다. 단, 평균점수가 기준점수 65점이상일 경우만 선발한다. <개정 2021.10. 1.>
2. 평균점수에 기준이 되는 최소 대회 참가수는 4개이며, 개인별 평균점수의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신설 2021.10. 1.>
 - 가. 대회 참가수가 4개 이상일 경우, 선발전 지정대회에서 획득한 합산점수를 대회 참가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신설 2021.10. 1.>
 - 나. 대회 참가수가 4개 미만일 경우, 선발전 지정대회에서 획득한 합산점수를 최소 대회 참가수 4개로 산정한다. <신설 2021.10. 1.>
 - 다. 대회 참가수 인정기준은 본대회 1라운드 배정된 시간에 티오프를 마친 경우에 한한다(라운드 중 실격 및 기권의 경우 포함). <신설 2021.10. 1.>
3. 평균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높은 선수가 우선한다. <개정 2021.10. 1.>
4. 합산점수가 동일할 경우, 동점자 모두 참가한 선발전 지정대회 중 최근 대회 성적을 비교하여 결정한다. (성적은 비교 대상 대회에서 정한 카운트백 방식 적용) <개정 2021.10. 1.>
5. 선발전 지정대회는 4개 이상 개최 시 적용되며, 4개 미만 개최 시 위원회 의결을 따른다. <개정 2021.10. 1.>

④ 국가대표 선발전

1.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선발되는 인원은 제9조의 정원에 따라 우선선발된 인원수의 잔여 자리로 하며, 아래 대상자에게 선발전 참가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21.10. 1.>

자 격	남 자	여 자
당해연도 국가대표	약간 명	약간 명
선발전 지정대회 평균점수 상위자 <개정 2021.10. 1.>	6명	6명
월드랭킹 50위 이내	약간 명	약간 명
KGA 주관 오픈대회 5위 이내	약간명	약간명
주1) 선발전 지정대회 평균점수의 산정은 제3항 제2호내지 제5호와 같으며, 평균점수 상위자 중 우선 선발 및 프로전향 선수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자에게 참가 자격이 부여된다. 차순위자가 동점일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에게 참가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21.10. 1.>		
주2) 당해연도 국가대표가 선발전 지정대회 평균점수 상위자 또는 월드랭킹 50위 이내, KGA 주관 오픈대회 5위 이내의 카테고리에 포함된 경우, 그 선수는 다수의 선발전 참가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여, 그 선수를 제외한 차순위자에게 선발전 참가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개정 2021.10. 1.>		
주3) 월드랭킹 반영 기준일은 선발전 개최 4주전으로 정한다.		

2. 선발전 지정대회는 아래와 같다.

구 분	대 회 명	대 회 수
남 자	허정구배 한국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드림파크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매경솔라고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베어크리크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송암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빛고을중흥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구 호심배), 전국(전국소년체육대회-중등)체육대회 개인전 <개정 2021.10. 1.>	7
여 자	강민구배 한국여자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드림파크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매경솔라고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베어크리크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송암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빛고을중흥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구 호심배), KB금융그룹배 여자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전국(전국소년체육대회-중등)체육대회 개인전 <개정 2021.10. 1.>	8
주) 삭제 <2021.10. 1.>		

3. 삭제 <2021.10.01.>

4. 삭제 <2021.10.01.>

⑤ 국가상비군 선발

1. 국가상비군은 제10조제2항의 대회에서 획득한 합산점수의 상위 순으로 제9조의 정원에 따라 선발한다.
2. 부별 정원에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자격을 갖춘 선수들이 포함되더라도 그 인원수를 제외하여 추가 선발하지 않는다. 단, 프로전향예정자가 정원(순위)에 포함될 경우 차순위자를 선발한다.
3. 합산점수는 대회에서 획득한 상위 점수순으로 최대 10개를 산입한다. (단, 중등부는 8개 대회 적용) <개정 2021.10. 1.>
4.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합산점수에 산입된 대회 수가 적은 선수가 우선한다. 합산점수와 대회참가 수가 동일한 경우 위원회 결의에 따라 정원을 초과하여 선발할 수 있다. 단, 합산점수가 100점 미만일 경우 정원이 미달 되더라도 선발하지 않는다.

⑥ 삭제 <2021.10. 1.>

⑦ 삭제 <2021.10. 1.>

제12조(이의신청) ① 협회는 선발된 최종명단을 확정하기 전에 후보명단을 공개하여 1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가지며, 후보대상자는 이의신청기간 내에 승낙 또는 포기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이의를 신청한 사람에게 민원사무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결과를 회신하고, 그 처리내용을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후보명단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0. 1.>

1. 협회에 등록된 선수

2.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한 선수 또는 보호자, 지도자, 소속 팀의 장

[본조신설 2021.10. 1.]

제13조(임명과 활동기간) 회장 승인으로 최종 임명된 선수의 활동기간은 당해년도 11월 1일부터 차기년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선수의 활동기간 중 결원 또는 증원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결의에 따르며, 보결 선수의 활동기간은 전임 선수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1.10. 1.]

제14조(선발기록자료 보존과 폐기) ①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 선발과 관련한 자료는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 시 확인 가능하도록 근거자료(선발결과 기록지, 회의자료 및 회의록 등)는 협회에 5년간 보존하고, 보존기간 기산일은 처리·완료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개정 2021.10. 1.>

② 회장은 다음의 각호에 따라 기록 보존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1. 정책 또는 사업 내용이 변경·조정되어 보존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각종 감사, 수사 또는 소송과 관련되어 그 종료 시까지 기록의 보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 회장의 승인을 거쳐 폐기하여야 하며,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문서세단기 등으로 절단하거나 원형의 내용을 알 수 없도록 완전 소각시킨다.

[제13조에서 이동 2021.10. 1.]

부 칙 (1996. 4.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7.18)

제1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제143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나 개정 전이라 할지라도 이 개정규정을 우선 준용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1. 9.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제143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5.22.)

제1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제147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나 개정 전이라 할지라도 이 개정규정을 우선 준용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3. 8.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제147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9.13.)

제1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제148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나 개정 전이라 할지라도 이 개정규정을 우선 준용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3.11.26.)

제1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제148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나 개정 전이라 할지라도 이 개정규정을 우선 준용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5. 3.20.)

제1조(경과조치)이 개정규정은 제151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나 개정 전이라 할지라도 이 개정규정을 우선 준용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6. 4. 1.)

제1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나 개정 전이라 할지라도 이 개정규정을 우선 준용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7. 3.23.)

제1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나 개정 전이라 할지라도 이 개정규정을 우선 준용하여 적용한다(2018년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 선발부터 적용)

부 칙 (2018. 3.15.)

제1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나 개정 전이라 할지라도 이 개정규정을 우선 준용하여 적용한다(2019년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 선발부터 적용).

부 칙 (2019. 4. 1.)

제1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나 개정 전이라 할지라도 이 개정규정을 우선 준용하여 적용한다(2020년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 선발부터 적용).

부 칙 (2019.12.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61회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7.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2020.7.7.)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0.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2021.10. 1.)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순위에 따른 배점표

200점 대회		150점 대회		100점 대회		50점 대회	
순위	배점	순위	배점	순위	배점	순위	배점
1	200	1	150	1	100	1	50
2	160	2	120	2	80	2	40
3	130	3	98	3	65	3	33
4	110	4	83	4	55	4	28
5	90	5	68	5	45	5	23
6	80	6	60	6	40	6	20
7	70	7	53	7	35	7	18
8	60	8	45	8	30	8	15
9	50	9	38	9	25	9	13
10	45	10	34	10	23	10	11
11	40	11	30	11	20		
12	36	12	27	12	18		
13	34	13	26	13	17		
14	32	14	24	14	16		
15	30	15	23	15	15		
16	28	16	21	16	14		
17	26	17	20	17	13		
18	24	18	18	18	12		
19	22	19	17	19	11		
20	20	20	15	20	10		